

국무총리행정조정실

우 110-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-77 / 전화 (02)738-6897 / 전송 720-2033

문서번호 국행삼 06065-15-3
시행일자 1993. 7. 16. (5/2)

수신 수신처 참조

취급		실장	국무총리
보존	5년		
조정관	表	✓	✓
심의관	印	총괄조의관-16	
서기관	7/6		
기안	김병길		협조

제목 집중호우대비 철저(국무총리 지시 제1993-9호)

오늘부터 장마전선이 재형성되어 전국적으로 70~150mm의 강우량과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하니,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각급기관은 지난 7.11~7.14일까지의 수재를 거울삼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1) 기상정보의 신속정확한 전파와 국민계도활동 강화

- 기상청 및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전파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고
- 텐 수위조절과 관련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하류지역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많은 물로 대피치 못해 인명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
- 지난수해시 인명피해가 낙뢰로 인하거나 하천, 계곡등에서 피서증에 발생한것이 많았던 점을 고려, 기상특보발효 예상시에는 TV, 라디오등을 활용, 국민행동 요령에 대한 계도에 철저를 기할 것.

(2) 피해예방대책 만전

- 각급기관은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형공사장, 하천, 재방, 교량, 절개지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점검, 정비를 철저히하고
- 인명구조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비상구조 체제를 확립할 것.

(3) 재해복구 및 구호활동 만전

-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및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활동에 만전을 기하고
- 도로, 철도등 공공시설의 복구와 함께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을 우선 복구토록하여, 국민의 생업활동과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
- 농경지의 침수, 유실, 매몰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히 복구토록 할 것.

(4) 기관장 현장확인

- 시장,군수등 일선행정기관장은 직접 재해현장을 확인,점검하는등 재해의 예방과 복구대책을 기관장 책임하에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기 바람. 끝.



국 무 총 리

수신처 가 07-57, 나 01-06, 10-18.

국무총리행정조정실

우 110-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-77 / 전화 (02)738-6897 / 전송 720-2033

문서번호 국행삼 06065-
시행일자 1993. 7. 16. (5)

수신 수신처 참조

선결			지시	
접수	일자 시 간			
번호			결재	
	처리과		· 공	
	담당자		람	

제목 집중호우대비 철저(국무총리 지시 제1993-9호)

오늘부터 장마전선이 재형성되어 전국적으로 70~150mm의 강우량과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하니,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각급기관은 지난 7.11~7.14일까지의 수재를 거울삼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(1) 기상정보의 신속정확한 전파와 국민계도활동 강화

- 기상청및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전파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고
- 댐 수위조절과 관련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하류지역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많은물로 대피치 못해 인명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
- 지난수해시 인명피해가 낙뢰로 인하거나 하천.계곡등에서 피서증에 발생한것이 많았던 점을 고려, 기상특보발효 예상시에는 TV.라디오등을 활용, 국민행동 요령에 대한 계도에 철저를 기할 것.

(2) 피해예방대책 만전

- 각급기관은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이있는 대형공사장, 하천, 제방, 교량, 절개지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점검, 정비를 철저히하고
- 인명구조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비상구조 체제를 확립할 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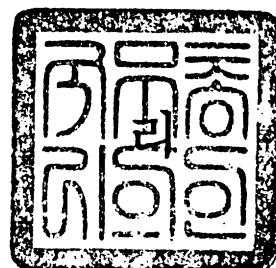
(3) 재해복구 및 구호활동 만전

-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및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활동에 만전을 기하고
- 도로,철도등 공공시설의 복구와 함께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을 우선 복구토록하여, 국민의 생업활동과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
- 농경지의 침수, 유실, 매몰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히 복구토록 할 것.

(4) 기관장 현장확인

- 시장,군수등 일선행정기관장은 직접 재해현장을 확인,점검하는등 재해의 예방과 복구대책을 기관장 책임하에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기 바람. 끝.

국 무 총



수신처 가 07-57, 나 01-06, 10-18.